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20-3

---

#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

---

2020. 9. 17.

관 계 부 처 합 동

# 순 서

## < ①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II) >

I. 추진배경 .....	1
II. 추진경과 .....	2
III. 기본방향 .....	3
IV. 추진과제 .....	4
1. 화학물질관리 분야 .....	5
2. 기술창업 분야 .....	7
3. 자원순환 분야 .....	14
4. 전자상거래·물류 분야 .....	18
V. 향후 추진계획 .....	22

## < ② 중소기업 현장공감 규제부담 정비방안 >

I. 추진배경 .....	30
II. 그간의 대응 및 평가 .....	32
III. 기본방향 .....	34
IV. 현장규제 부담완화 .....	35
1. 규제피해 사전예방 .....	35
2. 부담규제 현장정비 .....	40
V. 규제부담 최소화 기반강화 .....	47
VI. 향후계획 .....	48

①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II)

# I. 추진배경

## ①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전반의 규제혁신 가속화 필요

-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기업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디지털화·비대면화 등 新산업영역으로의 경제 대전환 진행중
  - \*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IMF WEO, %, '20.6월): ('20년) △4.9 ('21년) 5.4
- 급격한 환경 변화에 발맞춰 경제주체들의 자유롭고 다양한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근본적인 경제체질 개선 필요
- 이에,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한 경제 전반의 역동성 제고 추진
  -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은 사업애로 해소 및 新사업 모델 창출을 통해 일자리 증대·투자 확대에 이어질 것으로 기대

## ② 주요 산업 분야별 규제혁신 현장요구 지속 제기

- (기술창업) 급격히 부상한 디지털화·비대면화 등 新산업 영역 관련 법령의 부재 등으로 신사업의 창출 및 성장을 저해\*
  - \*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 중 31개사가 규제로 인해 국내사업 불가('19.8월, 아산재단)
- (자원순환) 경제발전 따라 지속가능한 경제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면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요구\*\*
  - \* 세계 환경산업 시장규모(EBI, 십억불): ('10년) 780 ('13년) 924 ('20년) 1,161
  - \*\* 폐기물의 발생 사전억제·적정 처분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고부가가치의 자원순환산업 활성화 지원 필요
- (전자상거래·물류) 경제의 디지털화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새롭고 다양한 사업영역에 대한 제반환경 조성 필요
  - \*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규모(eMarketer, 십억불): ('14년) 1,336 ('23년<sup>e</sup>) 6,542
  - 물류산업은 경제흐름을 뒷받침하는 핵심산업으로, 경제환경 전반의 변화에 따른 사업구조 재편 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

⇒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 시리즈의 두 번째 대책으로  
기술창업 + 자원순환 + 전자상거래·물류분야 규제혁신 추진

## II. 추진경과

### 1 10대 산업분야 규제개선 추진경과

- 민간주도로 선정된 10대 규제집중분야\*에 대한 규제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10대 규제개선 TF」 출범(2.13일)
  - \* ①데이터·AI, ②미래차·모빌리티, ③의료신기술, ④헬스케어, ⑤핀테크, ⑥기술창업, ⑦산업단지, ⑧자원순환, ⑨관광, ⑩전자상거래·물류
-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I)」 통해 65개 우선 추진과제 발표후(4.29일, 1차 경제중대본), 10개 분야별 대책 마련 착수
- 10개 작업반중 2개 작업반\*(관광, 핀테크)의 분야별 대책 既발표, 금번에 3개 작업반(기술창업, 자원순환, 전자상거래·물류) 대책 추진
  - \* 「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5.26일)」, 「핀테크 동태적 규제개선(8.21일)」 既발표
- (기술창업) 지방중기청·중기음부즈만 등을 통해 집중 발굴한 (20.3월~) 창업·성장 관련 34개 과제 규제검증위 상정(5.22일, 6.22일)
- (자원순환) 관계부처 협의(3.19일)·산업계 간담회(4.27일) 개최 후 산업계 파급효과 등 고려하여 24개 과제 규제검증위 상정(6.19일)
- (전자상거래·물류) 관계부처 협의(4.29일~5.8일(서면), 5.14일), 협단체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19개 과제 규제검증위 상정(5.20일)

### 2 3개 작업반의 민관합동 규제검증위원회 심의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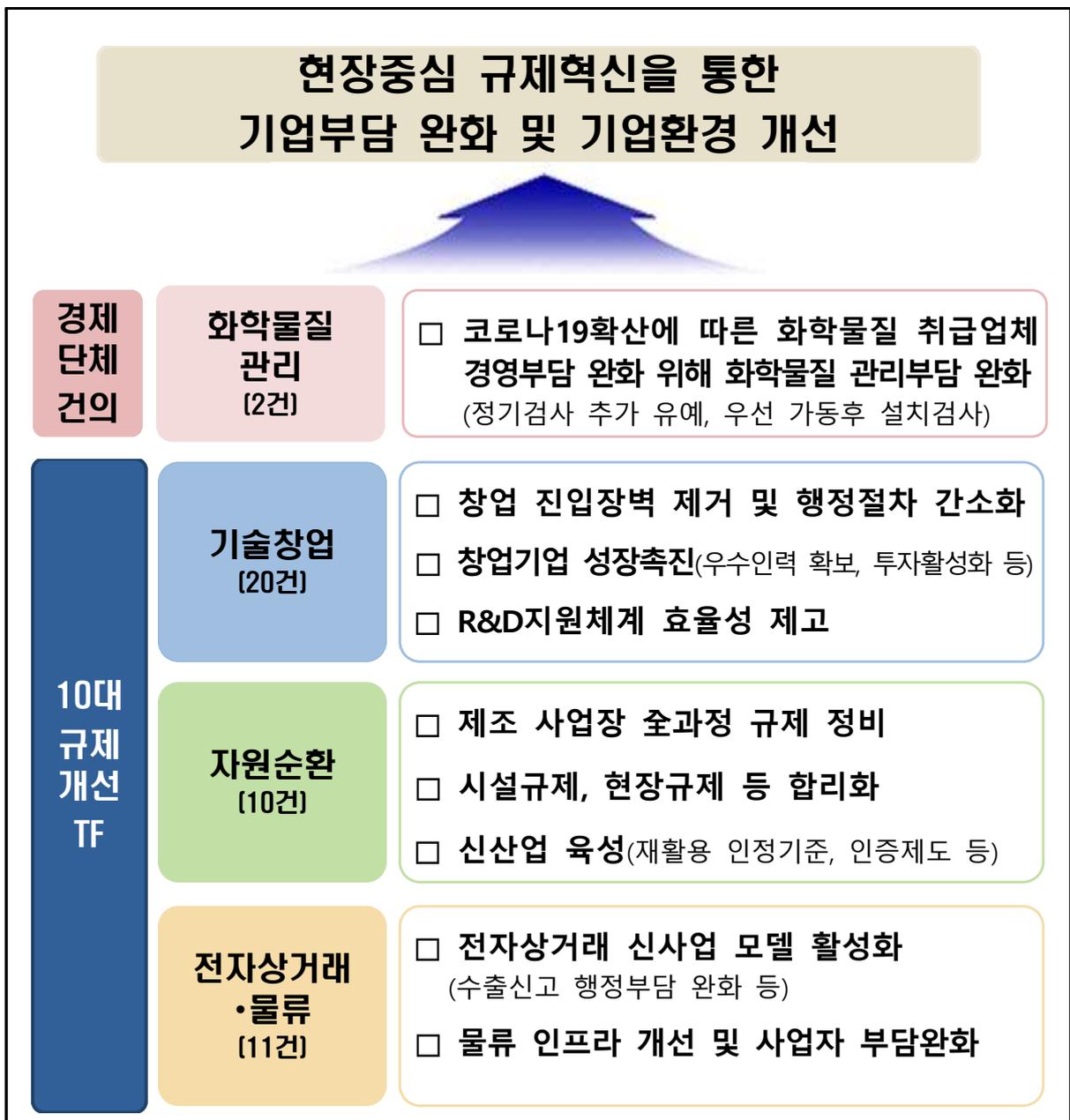
- (심의진행) 규제 소관부처가 1차적으로 발굴과제 검토후, 규제 검증위 통해 민간위원 의견수렴 및 규제 적정성 등 심층심의
  - 방침이 既결정된 과제는 세부내용 확정, 신규 과제는 심층 심사후 규제개선방향 결정, 존치과제도 개선 필요성 재검토
- (심의결과) 규제검증위 심의후 총 77건중 41건(54%) 개선 권고

< 민관합동 규제검증위원회 심의 결과 >

작업반	개최일	개선(폐지)	존치	중장기검토	계
기술창업	5.22일, 6.22일	20	1	13	34
자원순환	6.19일	10	4	10	24
전자상거래·물류	5.20일	11	3	5	19
계		41	8	28	77

### Ⅲ. 기본방향

- ◇ 산업분야별 맞춤형 규제개선 수요 파악(Two Track 접근) 및 조속한 규제혁신 추진 → 현장 규제혁신 체감도 극대화
- ① 경제단체 등 건의를 바탕으로 화학물질 관리부담 추가 완화(2건)
  - ② 「10대 규제개선 TF」의 3개 산업분야 작업반 발굴규제 개선(41건)
-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 및 지속적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총 43건의 규제개선 추진



## IV. 추진과제

◇ 총 43건(경제단체 건의 2건, 규제검증위 심의 41건)의 규제개선 추진

① (화학물질 관리) 정기검사 추가 유예 등 2건 개선

- 화학물질 취급업체 애로해소를 위해 정기검사 추가 유예 (~'20.12월) 및 우선가동 후 설치검사(변경후 30일내) 허용

② (기술창업) 진입장벽 제거·성장촉진·부담완화 등 20건 개선

- 창업범위 개편, 지식서비스업 부담금 경감 및 기술이전·사업화 제도 활성화 등 신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진입장벽 제거
- 혁신형중소기업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적용, ICT 융복합분야 산업기능요원 허용 검토 등 창업기업 성장촉진
- R&D 규정정비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절차 간소화·법령 정비를 통한 창업기업의 시간·인력 등의 부담 완화

③ (자원순환) 신산업·신기술 활성화 등 10건 개선

- 고부가가치 재생 플라스틱 GR인증기준 제정\*,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민간활용 허용 등 신산업·신기술 활성화 지원

\* (현행) 고품질 재생플라스틱 관련 우수재활용(GR) 보증하는 국내 인증 전무 (개선) 재생플라스틱 활용 전기전자 부품·제품별 품질기준 제정

- 혼합시설을 통한 폐기물 재활용 인정\*, 철강슬래그 재활용 지침 명확화, 소각열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방법 개선 등 추진

\* (현행) 혼합시설(분진과 슬러지 동시처리)은 폐기물 재활용 시설로 불인정 (개선) 혼합시설을 '폐기물 처리시설 없이 폐기물처리'로 인정해 처리 허용

④ (전자상거래·물류) 행정·비용부담 완화 등 11건 개선

- 전자상거래 수출신고항목 축소, FBA방식 전자상거래 수출 서류 부담 완화\* 등 전자상거래 분야 행정부담 완화

\* (현행) FBA방식 수출은 수출신고 수리내역 사후정정이 필수적으로 대부분 오류점수 부과 (개선) 오류점수 부과기준일 변경 등 통해 오류점수 부과 최소화

- 운행제한차량 운행허가 시스템 개선\* 등 통해 물류업체 부담 경감

\* (현행) 운송업체는 운송계약前 예상운행경로 허가증 발급 + 계약後 추가발급 (개선) 허가신청시 운행허가증이 1일내 발급되도록 시스템 기능 개선

# 1

## 화학물질관리 분야 (총 2건)

### ①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추가 유예

- (기존) 코로나19 확산 등을 감안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매 1~2년마다)를 9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
- (개선) 코로나 지속 확산에 따른 산업계 부담을 고려, 중소기업에 한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유예 연장(~'20.12월)
  - \* (중소기업) '20.10~12월 검사는 6개월 유예(단, '21.1월 검사부터는 유예없이 추진)
    - 예) '20.12월 정기검사 예정 기업은 '21.6월에 정기검사 시행
  - (중소기업 外) 대기업 등은 예정대로 '20.10월부터 재개
- (효과) 수검준비, 검사 수수료 등 정기검사 이행부담 일시적 경감 기대

### ② 화학물질 취급시설 변경시 우선가동후 설치검사 허용

- (기존) 既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미한 변경 시에도 설치검사 결과 통보전까지 공장 가동 불가
- (개선) 화학사고 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미한 변경(변경 신고 사항) 시, 우선 가동 후 설치검사 허용('21.1분기)
  - \* (현행) 가동 전 설치검사 이행 → (개선) 가동 후 변경일로부터 30일 내 설치검사 이행
- (효과) 경미한 시설 변경 시 공장가동 중단에 따른 생산 차질 및 손해 발생 등의 우려 방지 가능

※ (참고) 그간의 화평·화관법 관련 기업부담 완화 추진실적

대책명	과제 세부내용
<p>①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19.8.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年 1톤 미만 신규 대응물질 등록시 시험자료 제출 생략(~'21.12)</li> <li>• 국내 신규개발된 대응물질은 시험계획서 제출시 先제조 인정(한시)</li> <li>• R&amp;D용 대응물질 최소정보 제출·확인시 등록면제 인정(한시)</li> <li>• 취급시설 인·허가 및 영업허가 변경기간 75→30일 단축</li> <li>• 반도체 등 설비 특성을 고려한 별도 시설관리 기준 적용</li> <li>• 서류제출 부담완화 위해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 통합</li> <li>• 소부장 특별법 일몰법(21년) → 상시법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전략기술 해당 화학물질에 대해 ①화관법상 장외영향평가서 조속 검토 + ②화평법상 등록·등록면제확인 조속 처리</li> </ul> </li> </ul>
<p>②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방안 ('19.11.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해·위험성 등급, 그림문자, 신호어 등 기준 통일</li> <li>•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결과 관련 사업자 의견제출절차 명확화</li> <li>• R&amp;D목적 화학물질 등록면제기간 최대14일→최대 5일로 단축 (서류보완 소요기간 명시, 보완요구 최소화 등)</li> <li>• 화학물질 등록後 제조·수입량·용도 변경등록시한 1→6개월 연장</li> <li>• 강화규제 적용 지원 위한 사전 컨설팅 등 지원 대폭 확대</li> </ul>
<p>③ 코로나19 기업애로해소 및 수출지원 대책('20.2.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對日 159개 화이트리스트 품목에 적용하고 있는 화학물질 관련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긴급수요품목에 확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심사기간 단축(75→30일), ②R&amp;D용 물질 등록면제확인 처리기간 단축(최대14일→익일 처리)</li> </ul> </li> <li>• 시설안전관리 현장밀착 컨설팅, 등록 전과정 지원 등 우선 지원</li> <li>• 신속한 화학안전 제도 이행을 위해 중소·중견 유턴기업에 밀착형 컨설팅 및 융자금 우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컨설팅)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취급시설 기준 준수 컨설팅 53.5억원 활용 (융자금) 화학물질 취급시설 환경개선자금 620억원 활용</li> </ul> </li> <li>• 공급망 다변화 관련 수입 다변화 품목의 생산투입 연계를 위한 신뢰성 평가 우선 지원, 환경 관련 인·허가 등 Fast Track 적용 지원</li> </ul>
<p>④ 수출활력 제고방안 ('20.4.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 확대* (~'21.12) 및 정기검사 한시 유예** (~'2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日수출규제품목 159개 → (조정)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관리 338개</li> <li>** (현행) 매년 정기검사 → (조정) '20.9월까지 유해화학물질 정기검사 유예</li> </ul> </li> <li>• 年 1톤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등록시 시험자료 제출생략품목 한시 확대(159개→338개)(~'21.12)</li> </ul>
<p>⑤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 ('20.4.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 확대('19, 111억 → '20, 464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 컨설팅 및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한 등록 전과정 지원,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및 저가 제공, 기존 국·내외 시험자료 정보제공 등</li> </ul> </li> </ul>
<p>⑥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0.6.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해화학물질 취급용량 변경시, 장외영향이 확대되지 않는 경미한 변경은 우선 가동 후 검사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취급시설 변경시 설치검사後 시설가동(검사기간 6.4일 소요) (개선) 경미한 변경은 우선 가동 후 일정기간 내 검사</li> </ul> </li> <li>• 기업 요청시 취급시설 안전관리 컨설팅, 등록 전과정 지원,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저가제공 등 우선 지원(3차 추경 116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수요품목, 핵심소재 등 관련 소량 신규화학물질 포함</li> </ul> </li> </ul>

## 1. 창업 진입장벽 제거

## ① 융복합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범위 개편

- (기존) 정보화·지능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새로운 업종과 비즈니스가 계속 생겨나지만, 현행 법령 및 창업범위는 제조업 위주
  - 특히, 동종업종 판단기준이 넓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폐업후 동종업종을 영위할 경우 영원히 창업으로 불인정
- (개선) 디지털 시대의 산업의 세분화 및 융복합 업종의 다양화 추세를 반영하는 창업 범위로 재편 (창업지원법 시행령, '20.10월)
  - 다변화된 사업모델을 창업으로 인정하기 위해, 동종업종 판단 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가장 구체적인 '세세분류'로 개편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5자리 (대/중/소/세/세세 분류) >

< 현행 : 동종 >					< 개정 : 이종 >				
1	2	3	4	5	1	2	3	4	5
6	3	9	9	1	6	3	9	9	1
운영체제, 보안프로그램					운영체제, 보안프로그램				
6	3	9	9	9	6	3	9	9	9
음성변환서비스업					음성변환서비스업				

- ✓ (사례1) 타이어 제조사업 (C22111)을 하는 A가 폐업 후 기술·경험·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타이어 재생업 (C22112)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경우  
→ (현행) 동종(세분류)업종 창업 불인정, (개정안) 이종업종으로 창업 인정

- 폐업 이후 동종업종 재개시하면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 해소를 위해, 창업 인정기간 (3년\*) 설정

\* 부도/파산의 경우는 2년이 지나 동종업종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

- ✓ (사례2) A는 대학시절 담당교수의 권유로 게임업을 창업, 이후 학업 매진을 위해 4개월 후 폐업, 졸업후 게임업을 설립  
→ (현행) 이전 경력으로 창업 불인정, (개정안) 폐업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창업

☞ (효과) 기존 유사·동종업종의 지식·경험 등을 활용한 재창업 활성화

## 2 지식서비스업 창업 촉진을 위한 부담금 경감

- (기존) 제조업 창업기업은 창업후 3년간 16개 부담금\*을 면제 받고 있으나, 신산업의 주요 기반업종인 지식서비스업종은 제외
  - \* 창업지원법(39조의3): 전기부담금, 농자·산자·초지보전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등 16개
- (개선) 부담금 면제대상을 기술기반 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 (창업지원법 개정, '21.6월)

✓(예시) 제조 창업기업 면제 부담금(16개) 중 지식서비스업종에 부과되지 않는 3개(폐기물, 특정물질 제조수입, 해양심층수이용) 제외, 개발부담금 및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등 추가 검토중

- ☞ (효과) 지식서비스업에 적용되고 있는 부담금 경감으로 부가가치 유발 및 고용효과가 높은 지식서비스 창업 촉진

## 3 대학발 창업을 위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제도 활성화

- (기존) 대학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대학 내 기술사업화 기관과의 연계 부족 등으로 창업 활성화 한계

< 대학의 기술이전을 통한 기술사업화 기관 유형 >

구분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연구소기업	산학연기술지주회사	첨단기술지주회사
설립근거	벤처특별법	연구개발특구법	산학협력법	기술이전법
설립주체	공공연구기관, 대학, 일반회사		산학협력단, 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자회사 설립요건	주식/유한회사 형태로 설립, 지분보유율 규정없음		주식회사, 20% 지분 보유	
특징	대학은 자회사설립 불가	대학 자회사 지분보유 의무	자회사지분보유율 10% 하향 검토중	-

- (개선) 대학 내 산학연기술지주회사와의 연계 등을 통해 신기술 창업전문회사 활성화 방안(자회사 설립 허용 등) 검토 (벤처기업법 개정, '21.上)
- ☞ (효과) 대학과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고, 혁신 창업 산실로서 대학의 역할 강화

#### 4 신사업 및 융복합 서비스업 창업 촉진을 위한 법령 정비

- (기존) 기술 발전 및 시장수요 다변화로 인해 여행·레저·교육·육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사업 창출이 활발한 반면,
    - 관련 법률 부재, 타법률 간 저촉에 따른 규제 등 모호한 법률·규제로 산업 내 혼란 가중, 신사업의 창출 및 성장을 저해
  - (개선) 각 서비스별 단계적 해결 방안 제시 및 적법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정비 추진
- ※ 법령정비·신설이 필요한 개별 신사업 발굴 및 방안 제시를 위한 연구용역 진행 ('20.9~12월, 창업진흥원)

< (예시) 법령 정비가 필요한 신사업 >

과제명	기 존	개 선
① 육아 도우미 매칭 플랫폼	• 근거법률이 없어, 서비스 제공자의 <b>법적 의무와 책임</b> 에 대한 <b>법적 근거 부재</b>	• 육아 도우미 매칭 플랫폼 사업이 가능하도록 근거 법령 마련
② 플랫폼 기반 중개서비스	• <b>중개 플랫폼 사업자가 기존 산업의 규정을 따르도록</b> 하고 있어 사업수행에 어려움	• <b>IT 플랫폼 기반의 사업 특성</b> 을 고려하여 등록요건과 관련한 <b>규제 개선 검토</b>
③ 스터디 카페	• 신규 업종인 스터디카페는 독서실(스터디룸)과 구분이 불명확하고, 「 <b>건축법</b> 」에도 <b>기준이 없는 실정</b>	• 신규업종인 <b>스터디카페에 관한 별도 규정 신설</b> 및 산업분류 기준 마련

☞ (효과) 근거 부재에 따른 시장 혼란을 해소하고, 새로운 사업모델 창출 및 신사업 창업기업의 신속한 시장진입·성장 촉진

## 2. 창업·벤처기업 성장 촉진

### ①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확대

- (기존) 청년공제\* 가입대상은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이 원칙이나, 벤처기업·청년창업기업 등 일부 기업은 5인 미만도 가능
  - \* 청년-기업-정부 3자가 일정 금액 적립, 2년형(1.6천만원), 3년형(3천만원) 운영
  - \* (예외)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중 대한민국 창업리그 수상팀이 창업한 기업,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초기창업패키지 참여기업, 지식서비스 산업 등
- (개선)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도 청년공제 5인 미만 예외 대상에 추가(청년내일채움공제지침 개정, '21.上)
- ☞ (효과) 청년의 혁신형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근속 유인을 높이고, 기업의 우수 인력 유치에 기여

### ② 융복합 분야 정보처리 산업기능요원 지원방안 검토

- (기존) ICT 기술 발달로 산업간의 융복합을 통해 이전에 없던 다양한 형태의 융복합 사업 모델 창출중
  - 현행 6개\*로 분류된 정보처리분야 산업기능요원\*\* 규정이 최근의 신사업 유형을 포괄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필요
    - \* ① 정보처리업, ② 게임소프트웨어개발업, ③ 애니메이션제작업, ④ 영상게임기 제작업, ⑤ 정보통신기기제조업, ⑥ 방위산업
    - \*\* 군 복무 대신에 연구기관, 산업체 생산현장에서 일정기간 대체복무하는 제도
- (검토) 6개 분야에서 제외된 ICT 융복합 서비스 산업 분야 발굴 및 제도 적용 방안 검토\* 후 제도개선 추진
  - \* IT 인력의 수요가 있는 ICT 융복합 서비스 산업 분류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 시행 후 도입 방안 마련('20.下)
- ☞ (효과) ICT 융복합서비스 창업기업에 기술개발 전문인력 공급으로 창업기업 인력 부족 해소 및 기술력 제고

### ③ 창업투자회사 외부지정 감사 제외

- (기존) 감사인 직권지정의 예외범위에 벤처캐피탈인 신기술 금융사는 포함된 반면, 대표적 벤처캐피탈인 창업투자회사는 제외
  - 창투사의 모험자본 성격상 영업이익 적자시 외부감사 직권지정 확률이 높고, 이로 인해 적극적인 투자 활동 위축 초래
- (개선) 중기부로부터 관리·감독을 받는 창업투자회사는 감사인 외부 직권지정 예외로 인정('20.下)
- ☞ (효과) 외부기관 대응을 위해 중복적으로 지출되었던 관리·감독 비용의 절감 및 적극적인 투자 활동 추진

## 3. 중소·벤처 R&D 효율성 제고

### ① 부처별로 상이한 국가 R&D 수행기준 표준화

- (기존) 국가 R&D 부처별 세부 규율사항이 상이한 부분이 많고 통일성이 부족하여 정책 고객의 혼선을 초래하는 사례 빈번
- (개선)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R&D 표준매뉴얼 개정 추진

과제명	기 존	개 선
① R&D 기술 도입비 산정 표준화	• 기술도입비 산정에 대한 전문 기관의 소극적 승인으로 <b>기술 도입비 적극 활용 곤란</b>	• 기술도입비 기준 표준화 등 필요한 사항의 경우 <b>표준 매뉴얼 등에 반영</b>
② R&D 과제 중복성 검토 기준 표준화	• <b>중복성 검토기준</b> 이 구체적이지 않아 선정평가 시 <b>소극적 방향</b> 으로 검토	• 중복성 관점이 아닌 연구 수행방식, 연구단계 등의 <b>차별성 관점에서 검토하도록 개선</b>
③ R&D 인건비 증빙서류 간소화/표준화	• 확인내용이 중복되는 <b>서류를 과도하게 요구</b> 로 업무과중 초래	•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b>제출서류를 간소화</b> 하고 서류 간소화를 <b>표준매뉴얼에 반영</b>

- ☞ (효과) 업무 기준 명확화에 따른 수요자의 행정부담 완화 및 검토 기관 승인업무 효율화

## ② 창업기업의 국가 R&D 참여 부담 완화

- (기존) 국가 R&D 사업의 의무사항 (연구노트 작성, 현금부담)과 참여자격이 영세한 창업기업에게 애로사항으로 작용
- (개선) 전자연구노트 제공 및 현금 부담금·참여기준 완화 등 창업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시행

과제명	기 존	개 선
① R&D 연구노트 작성의무 완화	• 연구노트 작성을 위한 인력 및 관리체계가 부족하여 연구노트 작성에 애로	• 기업이 연구노트를 손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전자연구노트를 시스템화하여 제공 *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제공
② R&D 현금부담 비율 개선	• 규정상 10%이나, 실제 사업공고에서는 40% 이상으로 적용	• 개별 부처에 현금 부담금 완화 권고
③ R&D 참여부채 비율 규정 완화	• 부채비율 적용 예외 기준 설립 3년 이내	• 5년 이내로 확대

☞ (효과) 창업기업의 국가 R&D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지식재산권 경쟁력을 갖춘 안정적인 기업으로 성장 견인

## 4. 절차 간소화 및 법령 정비

### ① 창업기업 공장설립 관련 행정 절차 간소화

- (기존) 제조 창업기업의 공장설립 관련 인허가 사항 현행화 및 창업자의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해 창업지원법 정비 필요
- (개선) 타법 관련 의제사항 추가 및 부담금 면제 일괄신청 도입 등 창업기업 인력 및 시간 절감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추진

✓(사례) A사(제조창업자)는 전력기반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및 물이용부담금 면제 대상임을 구청으로부터 통보 받음

→ (현행) A사가 한국전력공사, 지방환경관리청, 시군수도사업자에 각각 방문 면제서류 제출, (개정안) 구청이 A사 건을 부과기관에 일괄로 면제 신청

과제명	기 존	개 선
① 사전재해 영향성 / 소하천 정비법 의제 추가	•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 사항 및 소하천점용 협의사항 의제 사항에 미포함	• 소하천 정비법에 관한 의제 사항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사항 의제 추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5조)
② 부담금 면제 절차 간소화	• 부담금 면제신청을 위해 개별 건마다 지자체·해당기관 방문	• 지자체 1회 방문으로 신청 및 부담금 면제 요청 완료

☞ (효과) 공장설립 및 행정절차 간소화에 따른 창업기업의 시간·인력 등에 대한 부담 경감

## ② 공장설립 관련 법률 명확화 및 미비사항 정비

- (기존) 제조창업기업 사업계획 승인취소시 공장 착공일, 승인 취소기준일, 협의결과 통보일 등을 지정하고 있으나,
  - 법률에서 정해진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법집행 실무자의 재량적 해석 여지가 커서, 행정기관과 창업기업간 분쟁 소지
- (개선) 공장 착공일의 기산일, 승인 취소 기준일 및 공장설립 협의 결과 통보일을 법에 명확히 제시 (창업지원법 개정, '21.6월)

과제명	기 존	개 선
① 공장착공일 명확화	• 사업승인 계획 취소시 기산일 산정에 '공장의 착공' 규정이 포괄적이며 불명확	• '공장착공일'을 「건축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날'로 규정
② 사업계획 승인 취소 기준일 명확화	• 사업계획 승인 취소시 승인기준일을 사안별 승인권자가 결정	• 중요사항을 변경승인 받은 경우에는 변경승인일을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당초 승인일로 규정
③ 행정기관의 공장설립 업무처리 기한 준수 강화	• 공장설립 관련 행정기관이 협의 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처리기한 미비	• 협의기관에서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

☞ (효과) 규정 명확화를 통한 법집행 실무자의 자의적인 해석 여지 축소, 적극 행정과 업무 신속 대응을 통한 창업기업 편의 제고

## 1. 신산업 · 신기술 활성화

## ① 고부가가치 재생 플라스틱 GR 인증 연계

- (기존) 고품질 재생플라스틱에 대한 우수재활용(GR; Good Recycled) 품질기준을 보증하는 국내 인증이 전무하여 활용 애로\*
  - \*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거나, 국내 재생업체에 해외 인증 획득을 요구
- (개선) 재생플라스틱을 활용한 전기전자 부품·제품에 대한 GR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신청시 제품별 품질기준 제정\*
  - \* 해당 제품의 안전·환경기준 등 법적기준도 고려
- ☞ (효과) 재생플라스틱 활용 활성화를 통한 수출기업 비용절감 및 경쟁력 향상 기대

## ② 복합재질 필름 제품 GR 인증규격 마련

- (기존) 現 GR인증 품질규격은 단일재질 필름류 위주로 복합재질 필름류 재활용제품은 규격 충족이 어려움
- (개선) 복합재질 필름류 재활용 제품 4개에 대해 신규 대상 제품 선정 공고('20.7.2) 및 품질기준 제정 예정\*
  - \* 대상제품선정(선정위원회)→기준제정(기준위원회)→심의·확정(심의위원회)
  - 기준을 효율적으로 제정하기 위해서 기존 규격의 시험항목에 대해 해당기업이 변경 제안을 해야 하므로 규격 개정에 필요한 절차 및 서류를 기업에 안내('20.5)
- ☞ (효과) 복합재질 필름류 재활용제품의 GR인증 활성화 및 공공기관에 구매 유인 제공

### 3 폐전선 재활용제품 인정기준 구체화

- (기존) 폐기물을 재생원료화하는 재활용 유형의 재활용 완료 판단기준으로 폐전선 재활용제품(구리 스크랩)에 대한 기준 미비
- (개선) 폐전선 재활용제품에 대한 재활용 완료 판단기준 마련(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1.3월)
- ☞ (효과) 폐전선 재활용 완료 후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  
→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관리 의무 미적용 및 재활용제품 혜택 가능

### 4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민간활용 허용

- (기존)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의 사용후 배터리는 지자체에 반납하도록 의무 부과
- (개선) 배터리의 지자체 반납의무 폐지·민간 매각 허용 + 매각 체계 구축\*(대기환경보전법·자원순환법·폐기물관리법 개정, '22.6월)
- \* 「친환경차 규제혁파 로드맵(현안조정회의, '20.4.23)」에서 논의한 안전처리 규정 정비를 통해 폭발사고 등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병행
- ☞ (효과) 배터리의 민간 활용 촉진을 통해 관련산업 육성 지원

## 2. 시설 등 사업애로 해소

### 5 혼합시설을 통한 폐기물 재활용 인정

- (기존) 공정에서의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가공시설 중 '혼합 시설'(분진과 슬러지 동시처리)은 폐기물 재활용 시설로 불인정\*
- \*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처분시설, 재활용시설)에서 처리 의무 규정(폐기물관리법)
- (개선) 혼합시설을 '폐기물 처리시설 없이 폐기물처리'로 인정해 폐기물 처리 허용(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1.3월)
- ☞ (효과) 사업장에서 발생한 공정 부산물의 재활용 촉진

## 6 폐기물 보관기간 탄력 적용

- (기존)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폐기물 보관기간 30일로 한정  
→ 계절적 요인 등에 의한 시멘트사의 석탄재 수요시기 불일치
- (개선) 시멘트 점토대체 원료로 국내 석탄재 사용시 보관기간을 30일 → 180일까지 확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1.3월)
- ☞ (효과) 국내 석탄재 재활용 촉진을 통해 기업 비용 절감 및 광산 개발 축소에 따른 환경오염 완화

## 7 철강슬래그 재활용지침 명확화

- (기존) 철강슬래그 처리 위탁시 일정크기 이하로 분리·파쇄한 후에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 (개선) 철강슬래그 발생업체의 분리·파쇄 없이 위탁처리업체가 분리·파쇄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명확화  
(철강슬래그 재활용지침 개정, '20.12월)
- ☞ (효과) 철강슬래그 발생업체와 위탁처리업체가 분리·파쇄설비를 중복 설치하지 않아도 되어 업체 설비비용 절감

## 3. 사업자 부담 해소

### 8 소각열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방법 개선

- (기존) 에너지회수율 산정방식 변경 이후 소각열에너지회수시설의 재활용시설 인정을 위한 에너지회수기준(75%) 달성 난항
- (개선) 전문가·업계의견 수렴하여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방법 등에 관한 개선안 마련  
(기존시설 효율검증 '20.7~21.6, 폐기물관리 관련법령 개정안 마련, '21.12월)
- ☞ (효과) 허가 요건 합리화를 통해 사업자 부담 해소

## 9 시멘트제품 폐기물 연료사용 관련 처분기준 완화

- (기존) 폐기물을 시멘트 제품의 '대체원료'와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달리 적용

\* 동일한 중금속 기준 위반에 대해서 '보조연료' 사용의 경우 1차 위반시 폐기물 반입 및 처리 금지 1개월 / '대체원료'의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 (개선) 시멘트 제품의 대체원료와 보조연료의 유해물질 함량 기준 위반 관련 처분기준 동일하게 적용(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1.3월)

☞ (효과) 유해물질 함량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합리화

## 10 리퍼비시 제품 재활용 실적 인정

- (기존) 전기·전자제품은 환경성보장제\*에 따라 재활용 의무 부여 → 리퍼비시(수선·재제조) 실적은 재활용 실적 미인정

\* 전기·전자제품의 환경 유해성 최소화 + 폐전기·전자제품의 환경친화적 회수 및 재활용 촉진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 의무 부과

- (개선) 리퍼비시 실적도 환경성 보장제의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전자제품등 자원순환법 및 관련지침 개정, '21.6월)

\* 다만, 리퍼비시 제품의 출고량도 해당년도 재활용의무 대상제품의 출고량에 포함시켜, 이중 실적 인정에 대한 우려 해소

☞ (효과)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통해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

## 1. 전자상거래 분야 행정부담 완화

### ① 전자상거래 수출 신고항목 축소

- (기존) 소액 전자상거래가 급증하고 있으나 신고절차가 번거로워 개인·업체 수출신고 미흡 → 소액 전자상거래 수출 관리부재
- (개선) 소액·다품종 거래 등 전자상거래 특성을 반영하여 물품배송정보를 수출신고로 전환하는 플랫폼\* 구축('20.10월)
  - \* 배송의뢰만으로 별도 수출신고없이 통관·배송업무 동시진행하는 One-Stop서비스 제공
- ☞ (효과) 전자상거래 수출 신고 편의 제고 및 소액 전자상거래의 수출실적 관리 효율화

### ② FBA 방식 전자상거래 수출시 수출서류 부담 완화

- (기존) FBA방식\* 수출은 신고내용과 실제판매수량·금액 차이가 발생하여 수출신고 수리내역 사후정정 필수적 → 대부분 오류점수 부과\*\*
- \* (FBA; Fulfillment by Amazon) 아마존 등 중개형 오픈마켓 물류창고에 제품을 입고 시킨 후 주문이 들어오면 운송·배달·고객 서비스를 오픈마켓에서 대행하는 물류서비스
- \*\* 오류점수 누적시 수출입신고 근거서류 제출의무 강화, 수출통관 검사율 상향 등 제재
- (개선) FBA 방식 수출後 신고 수리내역 사후 정정시, 오류점수 부과기준일 변경\* 등 통해 오류점수 부과 최소화 (수출통관 고시 개정, '20.9월)
  - \* (현행) 적재 완료일 → (개선) 해외에서 실제 판매된 날로 변경
- ☞ (효과) 거래형태상 발생하는 불이익 최소화 등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 ③ 전자상거래화물 하선장소 반입기간 연장

- (기존) 컨테이너 수입화물은 하선신고後 최초반입기한을 3일\*로 규정  
→ 인력·시설부족에 따른 통관지연 및 일상적 기한연장 발생  
\* 하선반입기한 제한 이유 : 외국물품 상태인 미통관 화물의 안전한 관리 목적
  - (개선) 물류지체 현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기한을 6~9일까지 단력적으로 한시적\* 연장 운영(인천세관장 자체계획 수립, '20.4월)  
\* 인천항 新터미널 특송물류센터 준공('23년) 이전 또는 인력·시설 확충으로 통관·화물처리 지연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한시 운영
- ☞ (효과) 통관업무 병목해소 및 전자상거래업체의 원활한 수출입 지원

## 2. 물류 분야 사업원활화

### ④ 여객터미널 계약체결시 사용료 납부기준 다양화

- (기존) 여객터미널내 입점업체는 입찰시 최고가액\*으로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어 예상치 못한 경기불황시 사용료 부담 가중  
\* 연간 재산가액(공시지가, 시가표준액, 감정평가액 등)의 2.5%~5% 기준으로 예정가격 산정 후, 입찰 진행하여 최고가액을 매년 고정사용료로 산정
  - (개선) 사용자가 입찰가 또는 매출연동 사용료 중 선택하여 납부 가능하도록 개선(관련 지침 제정, '20.12월)
- ☞ (효과) 임차인의 영업부담 완화 및 여객터미널 운영성과 공유를 통한 임대인·임차인간 상생 기대

### 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 대상 확대

- (기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 양도·양수는 같은 업종의 운송사업자 간에만 가능
  - (개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의 대상을 위·수탁 차주까지 확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20.6월)
- ☞ (효과) 지입 차주의 운송사업자로의 전환이 가능하게 되어 영업 선택권 증대 및 지입 차주 권익 향상 기대

## 6 자유무역지역 장기체화물품 처리절차 간소화

- (기존) 자유무역지역내 장기체화물품의 발생으로 물류사업자  
· 보세창고업자 등에 피해 + 국내외 물류흐름에 악영향
- (개선) 화주가 거절 의사표시 없이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세청장이 매각 가능토록 개선(자유무역지역법 개정, '20.12월)
- ☞ (효과) 자유무역지역의 물류흐름 효율 증대와 함께 보관업종  
업무환경 개선 기대

## 7 운행제한차량 운행허가 시스템 개선

- (기존) 운송업체는 신속한 화물 운송을 위해 운송계약前  
예상되는 모든 운행경로에 대한 허가증 신청\*(수수료 부담 가중)
- \* ①운송계약前 예상운행경로 허가증 발급 통상 3~4일 소요 + ②운송계약後  
실제운행경로가 예상경로와 상이한 경우 허가증 추가 발급 중
- (개선) 허가 신청시 운행허가증이 1일내 발급되도록 '제한  
차량 인터넷 운행허가 시스템'의 기능 개선
- ☞ (효과) 신속한 행정처리를 통한 운송업체의 수수료 부담 경감

## 8 무역항 항계 밖 수역시설 이용자 부담 완화

- (기존) 무역항 항계 밖 수역시설 이용시 '항만시설 사용료'에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 수수료' 추가 납부
- (개선) 수역시설 현황·입항여건 등을 고려하여 출입허가  
수수료 면제 장소를 추가 지정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 수수료 면제장소 지정고시 개정, '20.9월)
- ☞ (효과) 이용자의 출입허가수수료 부담 완화 및 납부 절차  
생략으로 업체의 시간·비용 절감

## 9] 공장의 캐노피 면적 규제 완화

- (기존) 도시 과밀화 관리, 도시 미관 등을 위해 원칙적으로 1m 이상의 돌출 캐노피(차양)\*는 건축면적에 포함하여 산정  
\* 햇볕 등을 가리기 위해 건축물에 설치되는 처마·차양 등의 시설로서 측사(3m), 전통사찰(4m), 창고(물품 입출고, 6m)는 건축면적 산정 제외
- (개선) 원활한 물품 입출고 등을 위해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공장의 차양면적(입출고 상부) 확대(1→6m, 건축법 시행령 개정, '20.12월)
- ☞ (효과) 대형 공장 등의 효율적 물류관리 지원

## 3. 소비자 편의 증대

### 10] 자가용 캠핑카 사용신고 규제 완화

- (기존)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로 분류된 캠핑카\*는 화물자동차 사용 신고 및 차고지 확보 의무 발생  
\* 캠핑카는 승용차, 승합차,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로 분류
- (개선)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인 비영업용 자가용 캠핑카는 사용 신고대상에서 제외\*(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20.12월)  
\* 경형 또는 소형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캠핑용자동차에 한하며, 피견인자동차는 제외
- ☞ (효과) 캠핑카 튜닝·이용 활성화를 통한 캠핑카 수요 확대 및 레저스포츠 저변 확대에 따른 내수 활성화 기대

### 11] 저비용 결제수단 이용고객 혜택 제공 확대

- (기존) 신용카드 가맹점은 소비자가 신용카드가 아닌 결제수단을 제시할 경우 신용카드보다 큰 할인혜택 등 제공 불가
- (개선) 저비용 결제수단 이용 고객에 대해 가맹점 수수료 범위내에서 신용카드 결제시 보다 큰 할인혜택제공 허용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20.12월)
- ☞ (효과) 직불형 모바일결제 등 다양한 저비용 결제수단 확산  
· 다변화 및 다양한 혜택 제공 등 금융소비자 편의 증대

## V. 향후 추진계획

◇ 「10대 규제개선 TF」를 통해 현장중심의 산업분야 규제혁신 지속 추진 및 사업애로 해소·新산업 창출 적극 지원

- 「10대 규제개선 TF」를 통해 산업분야 규제개선 지속 추진
  - 「10대 규제개선 TF」 전체회의(단장: 기재부 1차관)를 통해 기발표 과제의 이행상황 점검 및 신규 규제혁신 방안 논의
  - 규제검증위원회\*를 지속 개최하여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민간 의견 수렴 및 전향적인 검토 유도
    - \* 민간주도의 규제개선을 위해 민간위원장·기재부 차관보(공동주재), 정부위원(4명), 민간위원(4명)등 5개 산업영역별 총 10인으로 구성(정부:민간 5:5 균형)
- '20년말까지 未발표 산업분야별 규제혁신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 → 경제중대본 회의 등을 통해 확정·발표
  - 산업단지, 데이터·AI, 미래차·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등 5개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차질없이 마련

< 10대 산업 분야별 대책 발표 일정('20년) >

산업분야	주무부처	대책명	발표시기(잠정)
데이터·AI	과기부	· 데이터·AI 분야 규제혁신 방안	12월
미래차·모빌리티	산업부 국토부	· 미래차·모빌리티 규제혁신 방안	11월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복지부	·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 후속 대책	12월
핀테크	금융위	· 핀테크 활성화 위한 동태적 규제혁신 방안	既발표(8.21일)
산업단지	산업부 국토부	· 산업단지 규제혁신 방안	10월
관광	문체부	· 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	既발표(5.26일)
기술창업 자원순환 전자상거래 ·물류	중기부 산업부	·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II)	금번 발표(9.17일)

\* 음영: 既발표 대책

정책 과제	추진시기	협업 부처
<b>【화학물질관리 분야】</b>		
1. 화학물질 취급업체 정기검사 추가 유예	'20.12월	환경부
2. 화학물질 취급시설 변경시 우선가동후 설치검사 허용	'21.1분기	환경부
<b>【기술창업 분야】</b>		
1. 창업범위 개편	'20.10월	중기부
2. 지식서비스업 부담금 경감	'21.6월	중기부
3.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제도 활성화	'21.6월	중기부
4. 육아 도우미 매칭 플랫폼 정비 사항 발굴	'21.6월	중기부
5. 플랫폼 기반 중개서비스 정비 사항 발굴	'21.6월	중기부
6. 스터디 카페 정비 사항 발굴	'21.6월	중기부
7. 청년내일채움공제 적용대상 확대	'21.6월	고용부
8. 융복합 분야 정보처리 산업기능요원 지원방안 검토	'20.12월	병무청
9. 창업투자회사 외부지정 감사 제외	'20.12월	금융위
10. R&D 기술도입비 산정표준화	'21.6월	과기부
11. R&D 과제 중복성 검토 기준 표준화	'21.6월	과기부
12. R&D 인건비 증빙서류 간소화/표준화	'21.6월	과기부
13. R&D 연구노트 작성의무 완화	'21.6월	과기부
14. R&D 과제 현금부담비율 개선	'21.6월	과기부
15. R&D 참여부채비율 규정 완화	'20.12월	산업부
16. 사전재해 영향성/소하천정비법 의제 추가	'21.6월	중기부
17. 부담금 면제절차 간소화	'21.6월	중기부
18. 공장착공일 명확화	'21.6월	중기부
19. 사업계획 승인 취소 기준일 명확화	'21.6월	중기부
20. 공장설립 업무처리 기한 준수 강화	'21.6월	중기부

정책 과제	추진시기	협업 부처
-------	------	-------

<b>【자원순환 분야】</b>		
1. 고부가가치 재생 플라스틱 GR 인증 연계	수시	산업부(국표원)
2. 복합재질 필름 제품 GR 인증규격 마련	수시	산업부(국표원)
3. 폐전선 재활용제품 인정기준 구체화	'21.3월	환경부
4.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민간활용 허용	'22.6월	환경부
5. 혼합시설을 통한 폐기물 재활용 인정	'21.3월	환경부
6. 폐기물 보관기간 탄력 적용	'21.3월	환경부
7. 철강슬래그 재활용지침 명확화	'20.12월	환경부
8. 소각열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방법 개선	'21.12월	환경부
9. 시멘트제품 폐기물 연료사용 관련 처분기준 완화	'21.3월	환경부
10. 리퍼비시 제품 재활용 실적 인정	'21.6월	환경부

<b>【전자상거래·물류 분야】</b>		
1. 전자상거래 수출 신고항목 축소	'20.10월	관세청
2. FBA 방식 전자상거래 수출시 수출서류 부담 완화	'20.9월	관세청
3. 전자상거래화물 하선장소 반입기간 연장	'20.4월	관세청
4. 여객터미널 계약체결시 사용료 납부기준 다양화	'20.12월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5.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 대상 확대	'20.6월	국토부
6. 자유무역지역 장기체화물품 처리절차 간소화	'20.12월	산업부
7. 운행제한차량 운행허가 시스템 개선	수시	국토부
8. 무역항 항계 밖 수역시설 이용자 부담 완화	'20.9월	관세청, 해수부
9. 공장의 물품 입출고 캐노피(차양) 면적규제 완화	'20.12월	국토부
10. 자가용 캠핑카 사용신고 규제 완화	'20.12월	국토부
11. 저비용 결제수단 이용고객 혜택 제공 확대	'20.12월	금융위

과제명	부처명	담당과장	담 당
<b>1. 화학물질 관리 분야</b>			
화학물질 취급업체 정기검사 추가 유예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이영석 과장 044-201-6770	손명균 서기관 044-201-6771
화학물질 취급시설 변경시 우선가동후 설치검사 허용	환경부 화학안전과	김병훈 과장 044-201-6831	김용근 사무관 044-201-6837
<b>2. 기술창업 분야</b>			
창업범위 개편	중기부 창업정책총괄과	이순배 과장 042-481-1681	기정희 사무관 042-481-4384
지식서비스업 부담금 경감	중기부 창업정책총괄과	이순배 과장 042-481-1681	기정희 사무관 042-481-4384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제도 활성화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	이욱형 과장 042-481-4383	강성원 사무관 042-481-4425
육아 도우미 매칭 플랫폼 정비 사항 발굴	중기부 창업정책총괄과	이순배 과장 042-481-1681	기정희 사무관 042-481-4384
플랫폼 기반 중개서비스 정비사항 발굴	중기부 창업정책총괄과	이순배 과장 042-481-1681	기정희 사무관 042-481-4384
스터디 카페 정비 사항 발굴	중기부 창업정책총괄과	이순배 과장 042-481-1681	기정희 사무관 042-481-4384
청년내일채움공제 적용대상 확대	고용부 청년취업지원과	김상용 과장 044-202-7451	진선희 사무관 044-202-7495
융복합 분야 정보처리 산업기능요원 지원 방안 검토	병무청 산업지원과	이연우 과장 042-481-2965	김세용 사무관 042-481-2773

과제명	부처명	담당과장	담 당
창업투자회사 외부지정 감사 제외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	이옥형 과장 042-481-4383	김대수 서기관 044-481-4536
R&D 기술도입비 산정표준화	과기부 연구제도혁신과	이제준 과장 044-202-6950	박미월 사무관 044-202-6951
R&D 과제 중복성 검토 기준 표준화	과기부 연구제도혁신과	이제준 과장 044-202-6950	박미월 사무관 044-202-6951
R&D 인건비 증빙서류 간소화/표준화	과기부 연구제도혁신과	이제준 과장 044-202-6950	박미월 사무관 044-202-6951
R&D 연구노트 작성의무 완화	과기부 연구제도혁신과	이제준 과장 044-202-6950	박미월 사무관 044-202-6951
R&D 과제 현금부담비율 개선	과기부 연구제도혁신과	이제준 과장 044-202-6950	박미월 사무관 044-202-6951
R&D 참여부채비율 규정 완화	산업부 산업기술개발과	이재식 과장 044-203-4530	정재욱 사무관 044-203-4534
사전재해 영향성/소하천정비법 의제 추가	중기부 창업정책총괄과	이순배 과장 042-481-1681	기정희 사무관 042-481-4384
부담금 면제절차 간소화	중기부 창업정책총괄과	이순배 과장 042-481-1681	기정희 사무관 042-481-4384
공장착공일 명확화	중기부 창업정책총괄과	이순배 과장 042-481-1681	기정희 사무관 042-481-4384
사업계획 승인 취소 기준일 명확화	중기부 창업정책총괄과	이순배 과장 042-481-1681	기정희 사무관 042-481-4384
공장설립 업무처리 기한 준수 강화	중기부 창업정책총괄과	이순배 과장 042-481-1681	기정희 사무관 042-481-4384

과제명	부처명	담당과장	담 당
<b>3. 자원순환 분야</b>			
고부가가치 재생 플라스틱 GR 인증 연계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신재혁 과장 043-870-5500	백승환 사무관 043-870-5629
복합재질 필름 제품 GR 인증규격 마련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신재혁 과장 043-870-5500	백승환 사무관 043-870-5629
폐전선 재활용제품 인정기준 구체화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김효정 과장 044-201-7380	김광현 주무관 044-201-7393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민간활용 허용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김효정 과장 044-201-7380	남궁현 사무관 044-201-7384
혼합시설을 통한 폐기물 재활용 인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김효정 과장 044-201-7380	김광현 주무관 044-201-7393
폐기물 보관기간 탄력 적용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김효정 과장 044-201-7380	김광현 주무관 044-201-7393
철강슬래그 재활용지침 명확화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김효정 과장 044-201-7380	김광현 주무관 044-201-7393
소각열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방법 개선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김정환 과장 044-201-7400	나옥중 사무관 044-201-7408
시멘트제품 폐기물 연료사용 관련 처분기준 완화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김효정 과장 044-201-7380	김광현 주무관 044-201-7393
리퍼비시 제품 재활용 실적 인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김효정 과장 044-201-7380	남궁현 사무관 044-201-7384

과제명	부처명	담당과장	담 당
<b>4. 전자상거래·물류 분야</b>			
전자상거래 수출 신고항목 축소	관세청 통관기획과	강연호 과장 042-481-7810	구태민 사무관 042-481-7857
FBA 방식 전자상거래 수출시 수출서류 부담 완화	관세청 통관기획과	강연호 과장 042-481-7810	구태민 사무관 042-481-7857
전자상거래화물 하선장소 반입기간 연장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하유정 과장 042-481-7820	이자열 사무관 042-481-7904
여객터미널 계약체결시 사용료 납부기준 다양화	해수부 항만물류기획과	박영호 과장 044-200-5750	신강섭 사무관 044-200-575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 대상 확대	국토부 물류산업과	이진철 과장 044-201-4016	최은지 사무관 044-201-4017
자유무역지역 장기체화물품 처리절차 간소화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김태권 팀장 044-203-4630	박형진 사무관 044-203-4632
은행제한차량 은행허가 시스템 개선	국토부 도로시설안전과	강성습 과장 044-201-3927	박선훈 사무관 044-201-3926
무역항 항계 밖 수역시설 이용자 부담 완화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김동수 과장 042-472-7920	정지은 사무관 042-481-7945
	해수부 항만운영과	임영훈 과장 044-200-5770	이창엽 사무관 044-200-5775
공장의 캐노피(차양) 면적 규제 완화	국토부 건축정책과	김성호 과장 044-201-3755	백선영 사무관 044-201-3761
자가용 캠핑카 사용신고 규제 완화	국토부 물류산업과	이진철 과장 044-201-4016	최은지 사무관 044-201-4017
저비용 결제수단 이용고객 혜택 제공 확대	금융위 중소금융과	김종훈 과장 02-2100-2990	권진웅 사무관 02-2100-2983

## ② 중소기업 현장공감 규제부담 정비방안

## I. 추진배경

- ◆ 중기 규제영향평가 및 중소기업 음부즈만을 통해 중소기업 규제 부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기업활력 제고 및 코로나19 위기대응

### ① 규제는 기업에게 고정비용으로 작용하며 중소기업에 더욱 치명적

- 규제는 안전·환경·보건 등 사회적 가치를 위해 불가피하나 중소기업 등 피규제자는 규제이행에 따른 비용을 직접부담
  - 그 결과, 기업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과 체력을 줄여 기업의 기술혁신 등 경쟁력 제고와 산업의 자율경쟁을 가로막음
    - \* 통상 규제는 민간의 자율적 문제해결능력을 경시하고 순응비용을 고려하지 못한 채로 획일적으로 높게 설정되는 경향
- 또한 규제는 '규모의 경제'로 인해 중소기업에 보다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부담측면에서의 형평성 문제 및 불공정 경쟁 초래
  - \* 특히 10억 미만 영세기업은 평균 매출액은 4.4억원에 불과하나, 규제이행 비용은 1.8억원에 달해 매출의 약 41% 차지(음부즈만, '16년)

### ② 코로나19 등 실물경제 위기로 규제부담 가중 및 기업생존 위협

- 현정부는 선허용·후규제, 입증책임 전환, 적극행정 확산을 통해 광범위한 중소기업 규제혁신 및 민생불편·부담\* 해소를 추진중
  - \* 민생불편 규제혁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등
-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규제이행에 따른 고정비용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상황
  - 일자리를 지키고 새롭게 창출하기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비용 및 부담을 감축시켜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할 필요
    - \* 중소기업의 규제애로 개선은 수혜범위가 상당하며 일자리 창출·유지 및 기업의 안정적 경영에 매우 큰 영향

## <(참고1) 중소기업 규제애로 인식조사 결과>

⇒ 중소기업 436개사 대상 인식조사(중기 옴부즈만·글로벌리서치, '19.5~6월)

### 1. 기업은 과중한 부담을 야기하거나 불합리·불공평한 규제개선을 요구

- 기업 규모별 규제공정성에 부적절 응답이 67%를 차지하며, 절차 복잡, 규제실효성 부족 등 규제불만 원인이 다양하게 표출
- 또한 중소기업은 규제필요성에 공감하나 순응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공정한 규제, 합리적 규제가 현장에서 적용되기를 희망

### 2.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 규제부담 상당

- ☞ 대기업의 사고를 중심으로 소기업들의 기준까지 같은 수준으로 맞춰놓아 일괄처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음. 모든 기업은 대기업이 아니다. 중소기업, 소기업, 영세기업, 1인기업 등 형태가 다양하다. 제발 좀 기본적인 마인드를 바꾸길 바람
- ☞ 기업의 일을 해 보지 않은 교수나 행정관의 탁상공론식의 행정과 제재는 오히려 기업을 주눅 들게 만들고 일 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든다. 실제 기업 상황을 반영해서 차등 적용하길 바람. 소기업은 명령 불복종에 대한 보복이 두려워 울며 겨자먹기로 하고 있음
- ☞ 법이 너무 엄격하고 이를 수용하려면 비용이나 인력 등 중소기업체에서는 감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영세업체 등은 이를 수용하기 힘들어 폐업을 하고 있는 실정임. 규제 때문에 대기업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음
- ☞ 정부가 할일을 기업에 떠넘기지 않기. 최소비용으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 현실을 모른채 탁상행정으로 만든 법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엄청난 금전적 비용부담과 시간낭비를 하고 있으며 기업이 해외로 떠나고, 폐업하는 현실을 모른단 말입니까? 정말 지켜야 할 것을 없애 달라는게 아니라, 말도 안되는 걸 개선해 달라는 게 잘못된가
- ☞ 개선을 위한 규제가 아니라 규제를 위한 규제가 불합리. 탁상공론이 아니라 실질적인 현장 소통을 통한 해결방법 모색이 핵심
- ☞ 규제완화가 아니라 규제합리화를 요청합니다. 공무원들이 규제할 능력이 안되니까,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것임. 행정인력이 아니라 전문가가 필요
- ☞ 규제개선에 의견수렴이라던지 규제개선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림. 중소기업 보다 작은 소기업 소상공인은 기다리기에는 너무 긴 시간임

## Ⅱ. 그간의 대응 및 평가

### <중소기업 규제혁신 제도비교>



### 1. 중소기업 규제혁신 제도현황

#### ① (사전) 중기 규제영향평가 제도로 중기규제 신설·강화 피해절감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제도를 도입('09년)하고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중소기업 영향분석을 실시하여 시스템적으로 규제관리\*\*
  - \* 미국의 규제유연성법을 벤치마킹하여 비용효과 관점에서 중소기업 영향 최소화
  - \*\* 예 : 준수요건, 시행시기 차별화, 일부 업종(지역) 적용 면제, 이행수단 차등 등
- 중기 규제영향평가 근거를 법률로 상향반영('15.5.18)하여 구속력을 높이고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규제형평 원칙\*도 입법화('18.4.17)
  - \* 소상공인 등에 대해 과도한 규제부담 우려시 규제면제·유예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 ② (사후) 중기 옴부즈만 제도를 활용하여 현장중심 기존규제 정비

- 기업의 시각으로 중소기업 규제를 접근하여 상시적·체계적으로 규제정비\*를 추진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09년)
  - \* 미국 : '97년부터 규제집행공정화법에 의거 중소기업 옴부즈만(ONO) 운영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업현장 의견을 청취하여 규제 발굴·개선(건의·권고) 및 애로해소 업무 독립수행

## 2. 추진성과 및 평가

(’17.5~’20.5월)

### ① [성과] 중기 규제영향평가와 중기 옴부즈만 현장착근으로 현정부 2천여건 현장규제를 정비하고 규제피해 약 5천억원 절감

- (사전) 기업현실을 반영한 과학적 규제영향평가로 규제차등화, 규제유예·면제 등 85건\* 실시, 규제피해 5천억원 절감방지\*\*
  - \* 반영 : (’17.5~12월) 14건 → (’18) 31건 → (’19) 20건 → (’20.1~5월) 20건
  - \*\* 수혜 : (’17.5~12월) 1,986개사, 141억원 → (’18) 32,408개사, 1,342억원 → (’19) 60,191개사, 2,544억원 → (’20.1~5월) 34,084개사, 1,362억원
- (사후) 매주 2회 이상 현장을 찾아 총 324회 중기 옴부즈만 기업 방문·간담회 실시 및 2,676명의 기업인 등과 적극 소통
  - \* (’18) 시도별 민생규제 토론회, (’19) 서울자치구와 함께하는 기업그물망 간담회 등
  - 불합리한 기업현장 규제애로 2,027건\* 개선 등 총 13,062건 처리
    - \* 현황 : (’17.5~12월) 532건 → (’18) 430건 → (’19) 775건 → (’20.1~5월) 290건
  - 특히 작은기업\* 및 공공기관\*\* 등 규제개선 사각지대를 없애고 작지만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
    - \* 작은기업만을 대상으로 25개 기업군별 현장소통을 집중실시하여 사업걸림돌, 준조세 등 경영부담 규제애로 136건 일괄개선
    - \*\* 임대료, 조달, 고유사업 관련 공공기관 자체 규제애로 49건 최초정비 등

### ② [평가] 대내·외 경기악화를 극복하고 높아진 기업기대에 부응하기에는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만족하는 규제혁신 부족

- 상시적·체계적인 규제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기대 수준이 높아져 규제개선 체감도가 여전히 낮은 실정
  - \* 규제개선 타당성이 낮은 건의요청이 빈발하고 최저임금제, 근로시간 단축, 개인 정보보호 규제 등 가치충돌 및 사회적 합의 요구과제 건의가 급증하는 경향
- 이에 수요자인 기업이 만족토록 중소기업 규제혁신 제도를 보완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지속추진할 필요

### Ⅲ. 기본방향

◆ 중기 규제영향평가와 음부즈만 제도를 활용\*하여 규제피해 예방 18건, 부담규제 정비 27건 등 총 45건의 핵심규제 개선\*

\* 코로나19 발생이후 과도한 기업부담을 야기하는 규제를 집중검토·개선 추진

\*\* 국토부(13건), 환경부(7건), 농림부(5건), 복지부(4건), 산업부·해수부(각 3건), 교육부·조달청·식약처(각 2건), 과기부·중기부·농진청·관세청(각 1건) 등 13개 부처가 개선

○ 아울러 현행 중소기업 규제혁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토록, 기업 눈높이에서 규제부담 최소화 기반강화(제도개선)\* 방안 확정·추진

\* 기업참여 규제예보제 도입 검토,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내실화 절차개선

#### 추진 목표

중소기업 활력제고 및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지원

#### 추진 과제

규제 개선	1. 규제피해 사전예방 (18건)	1. 규제면제 및 대상축소 (6건) 2. 규제유예 및 공동이행 (6건) 3. 규제현실화 및 명확화 (6건)
	2. 부담규제 현장정비 (27건)	1. 창업·투자·연구 촉진 (8건) 2. 기업자율·경쟁력 강화 (10건) 3. 행정부담 경감 및 지원 (9건)
제도 개선	3. 규제부담 최소화 기반강화	1. 기업참여 규제예보제 도입 검토 2. 중기 규제영향평가 내실화

## IV. 현장규제 부담완화

### 1. 규제피해 사전예방

⇒ 규제면제·유예, 현실화 등을 통해 신설·강화 규제피해 차단(18건)

#### 1-1. 규제면제 및 대상축소

##### ① 건축물 점검·보수·보강 관련정보 입력대상 및 의무 축소 국토부(20.4월)

- (현황)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관련정보 기록·보관·유지 규제 신설\*\*이 추진되나, 점검시에도 의무부과되며 이력명세까지 입력

\* 전국 건축물 약 712만개 중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공장 및 상가는 약 34.2%

\*\* 모든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 점검·보수·보강 시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공사 전·후 주요도면, 주요구조부 공사사진, 이력명세를 등록

[사례] A산단 입주기업협의회는 기업이전 및 경매를 통해 건축물을 취득한 기업이 많으며 기존 설계도서를 유실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현 상황에서 점검·보수 등마다 관련정보를 입력토록 한 것은 너무 과중한 부담이라고 토로

- (개선) 관리계획 수립대상에서 공장과 지식산업센터는 제외하고, 관련정보 입력의무는 보수·보강시로 한정하며 이력명세 제출폐지

☞ 효과 : 건축물관리계획 작성, 검토비용 등 연간 약 850억 규제피해 예방

##### ② 토지굴착 및 옹벽설치 공사 감리원 상주의무 규제대상 축소 국토부(20.4월)

- (현황) 토지 굴착공사 등에 대해 공사기간 동안 감리원을 상주\* 토록 하여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초래 예상

\* 깊이 10m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는 비상주(수시) 감리 대상인 경우에도 관련분야(토질 등) 감리원(경력 2년 이상 건축사보)이 상주

\*\* 또한 10m 이상~20m 미만 토지 굴착공사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수행규제가 적용중

- (개선) 중소기업 경제부담 완화를 위해 산업단지 내 바닥면적 합계 2천㎡ 이하의 공장 건축물에 대하여 감리원 상주의무 면제

☞ 효과 : 연간 약 363개사의 규제비용 10억원 절감 효과

### ③ 경유자동차배출가스 측정기 의무구비 규제부담 완화 국토부(20.7월)

- (현황) 경유자동차 질소산화물 측정기 구비가 수도권 검사업체에 일률적으로 부과되어 경영자율 침해 및 부담 가중 예상

[사례]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는 검사장비 가격(약 1~1.5천만원) 부담으로 관련 검사장치 보유규제를 폐지하거나 선택구축하는 것을 희망

- (개선) 수도권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가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여부를 선택하여 측정기를 자율적으로 구비토록 개선

☞ 효과 : 수도권 지정정비(검사)사업자 364곳의 규제비용 약 36억원 절감

### ④ 항공운송 면허·등록 취소사유로 훈련계획 적절성 규제폐지 국토부(20.2월)

- (현황) 항공운송사업자는 훈련계획 부적절을 '중대한 결함\*'으로 판단, 사업취소가 가능토록 규제강화하는 것에 대하여 큰 불만

\* 항공사업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운항증명 과정에서 발생시 국내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은 면허취소, 소형항공운송사업은 등록취소

- (개선) 중대한 결함(취소요건) 사유에서 훈련계획 적절성 등을 폐지하고 자격·인원·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결함으로 개선

☞ 효과 : 신규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산업 진입불편 완화

## 1-2. 규제유예 및 공동이행

### ① 대기오염 방지시설 면제사업장 자가측정 의무부여 규제유예 환경부(20.4월)

- (현황) 방지시설 면제사업장에 대하여 자가측정(연 1회)을 의무화하는 것을 공포즉시 시행토록 추진, 소규모사업장 규제부담 예상

[사례] 울산소재 A기업은 자가측정 대행업체 수도 적고 자가측정 기준완화를 계속 건의했음에도 공포즉시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면 범법자가 될 것 같다고 불만

- (개선) 대기오염 방지시설 면제사업장에 대해 자가측정 의무규제 시행을 개정법령 공포일(20.4.3) 약 8개월 이후부터 적용(21.1.1)

☞ 효과 : 자가측정 의무대상 수혜업체 8천여곳의 측정비용 한시경감 28.7억원

## ② 축수산물 등의 기준 미설정 항균제 잔류기준 강화규제 시행연장 식약처(20.5월)

- (현황) 축·수산물 및 벌꿀의 기준 미설정 항균제\* 잔류기준이 충분한 유예없이(기간 1년) 강화 예정으로 부적합 제품증가 우려

\* 식품 중 기준 미설정 항균제에 적용하는 기준을 현행 0.03mg/kg에서 0.01mg/kg으로 개정·추진되어 고령업계 비중이 높은 축수산 생산업자의 규제순응 문제초래

[사례] 유가공협회 및 낙농육우협회는 규제강화 취지는 공감하나 규제강화 내용의 현장인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충분한 교육실시가 요구된다고 주장

- (개선) 기준 미설정 항균제에 대한 잔류기준 강화규제 유예기간을 기존 1년에서 약 1년 6개월로 연장('20.5.27 개정, '22.1.1 시행)

☞ 효과 : (수혜업체) 축·수산물 생산·수입업자 약 27만명

## ③ 농약 포장지 표시기준 규제변경 적용유예 농진청(20.7월)

- (현황) 농약 포장지 규제강화에 따른 기존 생산품 사용기한을 약 1년간('20.12.31)으로 규정하여 업계 재고부담 및 경영손실 예상

\* 식품·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변경시 2년 이상 시행기간을 유예한 바 있음

- (개선) 농약 포장지 표시기준 변경규제 적용을 약 2년간 유예하여 고시시행 전 생산 보유제품의 사용을 허용(~'21.12.31)

☞ 효과 : (수혜업체) 농약 제조·수입업체 110개소

## ④ 지역응급의료기관 보안인력 배치규제 겸임허용 복지부(20.4월)

- (현황)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보안 전담인력 배치의무 규제신설이 추진되어 중소기업체 규제이행비용 가중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정신병원만 해당)

[사례] 대한병원협회는 폭행발생 비율이 명확하게 높은 2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이나, 응급실을 보유한 의료기관에 한해 신설규제 적용 희망

- (개선) 지역응급의료기관은 보안 전담인력의 응급실 이외 의료기관 보안업무 겸임이 가능토록 관련법령 정비

☞ 효과 : 100병상 이상 지역응급의료기관(118곳 추정)의 고용비용 약 33억원 절감

## 1-3. 규제현실화 및 명확화

### ① 낚시어선 선장 승무경력 요건완화<sup>해수부(20.2월)</sup>

- (현황) 낚시어선 선장\*에 대하여 선박출입항 240일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여 기존 낚시어선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 발생 예상

\* 기존요건 :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 또는 상위등급의 해기사 면허

[사례] 낚시어선협회는 낚시어선은 10톤 미만 소규모 어선으로 출입항 기록 240일 경력요건은 3년 정도의 업력을 가진 사업자도 현실적으로 맞추기 어렵다고 토로

- (개선) 선박출입항 기록 240일 이상 경력요건을 절반으로 단축

☞ 효과 : 기존 어선 4,543곳의 규제 부담 완화

### ② 폐지 수입신고시 제출서류 및 반출기준 완화<sup>환경부(20.7월)</sup>

- (현황) 폐기물 수출·입 신고가 면제\*된 폐지에 대해 모두 신고 토록 하여 현실적으로 관련 서류제출\*\* 등 규제이행 부담상당

\* 기존에는 폐유 등에 오염되지 않았거나 이물질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신고면제

\*\* (수출) 수출·운반계약서 등 6종, (수입)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등 10종

- (개선) 폐지 수입신고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제출면제 및 반출 명령 기준 완화(이물질 함량 0.5% 이하 → 3% 이하)

☞ 효과 : 국내 제지업체 56개사, 폐기물처리업 등록부담 면제 등 145억원 비용 절감

### ③ 우선추출방식의 표본조사 활용가능 감정평가 대상 명확화<sup>국토부(20.2월)</sup>

- (현황) 감정평가 표본조사시 우선추출방식\* 허용대상을 '부실발생 우려가 높은 분야'로 규정하여 기업 혼란 야기 및 징계발생 여지

\* 현행 감정평가 무작위추출 표본조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부실감정 방지를 위하여 우선추출방식의 표본조사를 허용대상을 정하여 도입 예정

- (개선) 우선추출방식 표본조사가 가능한 감정평가 대상을 '부실 발생 우려'가 아닌 '부실이 실제 발생한 분야'로 명확화

☞ 효과 : (수혜업체) 감정평가사업자 1,140곳

#### 4 아동·분만병원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대상 기준 현실화 복지부(20.7월)

- (현황) 아동·분만병원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고시 신설시, 최소 병상수, 전문의 수 등 인정요건\*\*이 과도, 수혜병원은 미미 예상

\* 병원 2·3인실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병원에 대한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중단('19.7월~), 다만, 아동과 산모의 1인실 선호 등을 고려하여 아동분만병원은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 최초 인정요건(안) : (전문의) 아동 6인, 분만 8인, (최소 병상수) 60병상 등

[사례] 아동병원협회는 소아환자 특성상 감염병이 85%에 육박하고 환절기를 제외한 병상가동률이 낮다고 지적하며, 평균 병상은 56개에 불과하다고 토로

- (개선) 아동·분만병원 인정요건의 최소 병상수를 서울 50병상, 그 외 30병상으로 완화하고 병원별 전문의 수\* 기준도 낮춤

\* 아동병원(서울 5명, 그 외 3명), 분만병원(서울 7명, 그 외 4명)

☞ 효과 : (수혜병원) 아동병원 112곳, 분만병원 73곳

### 별첨1

#### <규제피해 사전예방 기타 개선과제>

##### 1-1. 규제면제 및 대상축소

- ① 폐기물처리업 중 수집·운반업의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을 처분업·재활용업과 같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환경부, '20.5월)
- ② 폐기물처리업 결격사유 대상범위를 벌금형 1천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여 결격사유 완화(환경부, '20.5월)

##### 1-2. 규제유예 및 공동이행

- 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의무배치 기간을 공사 전기간(약 30개월)에서 마감공사기간(약 11개월)으로 축소하고 6개월 시행유예(국토부, '20.5월)
- ② 건설·농업기계 원동기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규제 유예기간을 3개월(~22.6.30) 추가부여(환경부, '20.4월)

##### 1-3. 규제현실화 및 명확화

- ①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작성준수 위반내용 공표시 홈페이지를 제외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만 게시(국토부, '20.2월)
- ② 자동차 비상자동제동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검사기준·방법을 '전자장치진단기 확인 및 미진단시 육안확인'으로 명확화(국토부, '20.2월)

## 2. 부담규제 현장정비

⇒ 창업·투자·연구, 기업자율·경쟁력 강화 및 행정부담 경감(27건)

### 2-1. 창업·투자·연구 촉진

#### ① 채소·화훼작물 육묘업 등록기준 합리화 농림부(20.하)

- (현황) 육묘업\*의 등록기준이 작물별 육묘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소규모 농가의 불필요한 부담 초래
  - \* 씨앗이 발아하여 자란 어린식물체인 묘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행위의 업
- 특히 양파, 파 등 노지(露地) 육묘 작물 재배업체는 철재하우스 설치, 난방기 의무구비 등 시설기준에 대하여 불만 상당
- (개선) 양파, 파는 육묘업 시설기준 적용을 제외하고 난방기는 작물의 종류, 육묘시기,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설치
  - ☞ 효과 : 소규모 농가의 채소·화훼작물 육묘업 등록애로 해소 및 활성화

#### ②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기준 완화 식약처(20.7월)

- (현황)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는 학교주변 영세점포가 많으나 위생수준과 관련이 낮은 창고 설치요건으로 우수업소로 지정불가
  -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식품(라면, 떡볶이, 튀김 등), 가공식품(과자, 캔디, 빵, 초콜릿, 어육소시지, 면류, 김밥, 햄버거, 빙과, 아이스크림 등) 등
- (개선) 우수판매업소 지정요건에서 창고 의무설치 제외
  - ☞ 효과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확대를 통한 자영업자 영업 개선

#### ③ 마스크 제조업체 연구개발특구 입주제한 완화 과기부(20.5월)

- (현황) 마스크 수요급증에 따라 생산시설 확충이 요구되나 연구개발특구 내 산업용지 입주제한 업종에 해당되어 신·증설 불가
  - \* 조달청 등록 및 관공서 등 마스크 납품을 위해서는 공장등록이 필수요건

[사례] 광주특구 내 「장성 나노기술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인 D기업은 마스크를 제조하기 위해 업종 확대 요청하였으나 특구 관리계획에 따라, 기타직물 제품 제조업(13229)은 입주제한 업종이라고 승인거절

- (개선) 연구개발특구 내 마스크 제조업이 가능토록 기타직물 제품 제조업(13229, 보건용·수술용 마스크에 한함)에 대해 입주자격 승인
  - ☞ 효과 : 마스크 제조 확대로 코로나19 국민방역과 입주업체 매출신장에 기여

#### 4 연구개발 벤처기업 확인요건에 연구개발전담부서 추가 중기부(20.2월)

- (현황) 연구개발 벤처기업 확인\*시 기업부설연구소만 인정되고 인적규모가 작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제외되어 창업기업 불편
  - \* (기본요건) 기술부설연구소 보유, 연구개발비가 연간 5천만원 이상 및 총 매출액의 5~10% 이상, (기타 평가) 사업성평가 우수(65점 이상)
  - \*\* 기업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의 전 단계로 활용하는 경향

[사례] 창업기업 T사는 자금이 없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먼저 설치하였는데 연구개발비 및 비율은 충족하였음에도 벤처인증을 받지 못한다고 불만

- (개선) 연구개발 유형 벤처기업의 연구개발조직 요건에 기업부설 연구소 외에 연구개발전담부서도 포함
  - ☞ 효과 : 연구개발 중심 창업초기기업의 벤처기업 인정에 따른 지원 강화

#### 5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전문인력 범위 확대 산업부(20.하)

- (현황)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2명 이상의 전문인력(기사)이 필요하나 신재생 발전설비에 필수적인 에너지·기상분야가 미포함\*\*
  - \* 1M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 생산전력 등을 중개 사업자가 모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사업
  - \*\* 에너지·기상분야 자격(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기사(태양광), 기상기사 등)은 신재생 발전설비 시공·운영·유지보수 및 발전량 예측 등을 위해 필수적
- (개선)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등록 인력요건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기상 분야 자격증 소지자 추가
  - ☞ 효과 : 에너지·기상 기사 자격자의 신재생 발전설비 진출로 관리 강화

## 2-2. 기업자율·경쟁력 강화

### 1 지역특산주 주원료 기준범위 유연화 농림부('20.하)

- (현황) 지역특산주\* 주원료\*\*는 인접지역 내에서만 조달해야 하며, 타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소량이라도 첨가하면 생산불가

\* 농·어업경영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그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

\*\* 제조하려는 술의 제품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원료(원료가 여러 종류인 경우에는 최종 제품의 중량비에 따라 상위 3개 이내의 원료로서 양조용수와 첨가주정, 당분은 제외)

[사례] 경북 의성군 소재 H사는 기존의 지역특산주에 장미추출물(경기도 생산)을 0.1% 첨가하여 신제품을 출시코자 하였으나 부적합 통보, 생산포기

- (개선)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소량 사용원료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현행 주원료 기준 완화

☞ 효과 :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및 다양한 전통주 개발로 시장확대에 기여

### 2 액화가스의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기준 완화 산업부('20.하)

- (현황)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에 있어, 액화가스는 위험성이 낮음에도 압축가스, 해외국에 비해 대상기준\*이 높아 관련업체 불만

\* (국내-액화가스) 250kg 이상, (국내-압축가스) 50m<sup>3</sup>, 약 500kg,  
(일본-액화가스) 3,000kg 이상, (일본-압축가스) 300m<sup>3</sup> 이상, 약 3,000kg

- (개선) 액화가스에 대한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기준을 현행 저장능력 액화가스설비 250kg 이상에서 500kg 이상으로 개선

☞ 효과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관련, 압축가스와 액화가스간 형평성 확보

### 3 이동식 휠체어리프트 조달품목 별도 신설 조달청('20.4월)

- (현황) 이동식 휠체어리프트\*는 별도 조달품목이 없어, 승강기(고정식) 제조업 등록·직접생산 확인을 득해야만 조달참여 가능

\* 장애인 및 시용이용약자 편의증진을 위해 이동식 휠체어리프트 설치가능('20.1월)

- (개선) 이동식 휠체어리프트 조달품목을 신설하여 승강기 제조업 등록 및 고정식 직접생산 확인요건 적용 폐지

☞ 효과 : 이동식 휠체어리프트 조달업체의 승강기 제조업 등록비용 경감(업체당 2억원)

#### 4 시설물 안전점검시 신기술·점검 로봇 활용 명확화 국토부('20.하)

- (현황) 신기술·점검 로봇을 활용한 시설물 안전점검(외관조사, 영상 분석)이 허용되었으나 세부지침이 개정되지 않아 현장 혼선·애로
- (개선) 시설물 외관조사 등에 있어, 다양한 장비를 통한 영상분석 기술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침 개정 및 명확화

☞ 효과 : 안전점검 업무 효율화 및 데이터활용 신뢰도 향상을 통한 안전 확보

#### 5 가축 등 화물운송차량 운전자의 화물선 탑승허용 해수부('20.6월)

- (현황) 가축 등 동물(살아있는 수산물 포함) 운송차량을 화물선에 실어 이동시 운전자는 화물선에 승선 불가, 각종 불편\* 초래
- (개선) 가축·동물·살아있는 수산물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화물 운송차량의 화물관리인(운전자)을 임시승선자로 인정, 탑승허용

\* 화물운전자는 별도 교통수단을 활용하여 이동하여야 하며, 항만 도착시간 지연에 따른 하역 시간 조정, 화물선 내 돌발상황 발생 시 처리능력 부족으로 상품훼손 등 어려움 토로

☞ 효과 : 화물선 내 가축, 동물, 살아있는 수산물 등 적절한 관리 및 운송차량 운전자의 별도 교통수단 이용에 따른 불편·부담 경감

#### 6 해양수산 연구개발결과물 이용 착수기본료 인하 해수부('20.7월)

- (현황) 해양수산 국가연구개발 참여기업의 연구개발결과물 활용에 따른 착수기본료\*가 타 분야\*\*보다 과도하여 기업 이용부담 상당
- (개선) 해양수산 연구개발결과물 이용 착수기본료를 타 부처 수준으로 대폭 인하(중소기업 1%, 중견기업 2%, 대기업 4%)

\* 정부출연금의 일정비율 : (중소기업) 5%, (중견기업) 10%, (대기업) 10%

\*\* ① 과기부 : (중소기업) 1%, (중견기업) 2%, (대기업) 4%, ② 농림부 : 면제

☞ 효과 : 연구개발 활용도 제고와 참여기업 부담 완화

## 7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처분부담금 합리화 환경부(20.하)

- (현황) 시장 등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기준으로 처리하나 사업장 부담금 요율이 적용되어 부담 가중

- \* 사업장폐기물 :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 \* 매립(원/kg) : (생활폐기물) 15원, (사업장폐기물) 가연성 25원, 불연성 10원
- 소각(원/kg) : 종류 구분 없이 10원으로 동일

[사례] 전남 여수 소재 S시장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후 시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공동 위탁처리하고 있으나, 폐기물처분부담금이 톤당 2만5천원으로 생활폐기물보다 만원이 높아 연간 15백만원 추가비용 발생

- (개선)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유사한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시 생활폐기물 요율 적용

☞ 효과 : 시장상인 등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배출사업자 비용부담 경감

## 2-3. 행정부담 경감 및 지원

### 1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 서식 개선 국토부(20.하)

- (현황)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시·군·구에 등록신청)에는 사업자(대표자)의 개인주소가 표시되고, 사업자등록번호는 미기재
  - 개인주소 기재로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고, 법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정보 부재로 동일명칭 사업자간 구분 불편
- (개선)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 상 개인주소 표시사항을 삭제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정보를 표시

☞ 효과 : 개인주소 삭제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 및 법인정보 확인 편의성 제고

### 2 본인 소유 건설기계등록원부 발급절차 간소화 국토부(20.하)

- (현황) 본인 소유 건설기계 등록원부(등·초본)는 자동차\*와 달리 신청서 없이 신분증명서 제시만으로는 발급·열람 불가

- \* 본인 소유 자동차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제시만으로 등록원부 발급·열람 가능

- (개선) 본인 소유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열람 신청시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명서 제시만으로 발급·열람 허용
  - ☞ 효과 : 등록원부 신청기업의 편의 증진 및 관련 행정력 제고

### 3 학원 등록·변경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출 생략 교육부(20.하)

- (현황) 학원 등록\* 또는 등록사항 변경시 신청인은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만 함
  - \* (제출서류)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학원 시설평면도, 이사회회의록, 시설사용서류 등 5종 (미제출서류) 학원 건축물대장등, 주민등록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3종
- (개선) 전기안전점검확인서도 건축물대장과 같이 직접제출 없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토록 규정 개정
  - ☞ 효과 : 학원 사업자의 서류제출 불편·부담 경감

### 4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제증서 미교부시 행정처분 완화 국토부(20.8월)

- (현황)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관한 설명을 누락하거나 서류 미교부시 과태료(30만원) 부과
 

[사례] 공인중개사 A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나 단순 착오로 관계증서 사본을 제공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부과받았다고 불만 토로
- (개선)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단순과실임이 인정될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도록 법령에 명시
  - ☞ 효과 :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부담 경감

### 5 컨테이너 화물의 일시양륙 사전신고 부담완화 관세청(20.7월)

- (현황) 외국물품은 일시양륙 사전신고를 해야 하나 적재위치 변경 등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일시양륙이 빈번하여 현장애로 상당
- (개선) 컨테이너 화물(외국물품)의 안전 및 적재공간 확보 등 세관의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일시양륙 사전신고 생략
  - \* 선박 안전 및 적재공간 확보 등을 위해 접안부두 내 컨테이너의 일시양륙이 불가피하고 일시양륙 내역을 실시간 기록·관리하며 출항허가 전까지 본선에 재적재하는 경우
  - ☞ 효과 : 보세화물 취급업자의 신고비용 절감 및 신속한 하역업무 지원

<부담규제 현장정비 기타 개선과제>

**2-1. 창업·투자·연구 촉진**

- ①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에 대하여 주유소·충전소 등과 같이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허용(국토부, '20.하)
- ② 지상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의 녹색기술 인증시 오염물질 센싱기술 (오염물질 농도와 센싱 농도의 상관성 계수 등) 요건완화(농림부, '20.5월)
- ③ 식품 고압처리 녹색기술 인증시 살균항목 기준을 기존 '효율증대'에서 '식품공전 규격충족'으로 완화(농림부, '20.5월)

**2-2. 기업자율·경쟁력 강화**

- ① 폴리염화비닐 천장재 조달품목을 열가소성수지 천장재로 확대·변경하여 친환경 천장재 조달애로 해소(조달청, '20.4월)
- ② 열사용기자재 수입기기 제조검사 수수료를 해외제조사 뿐만 아니라 국내 수입업체도 원화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대상 확대(산업부, '21.하)
- ③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중단·협약해약 과제에 대한 3년간 추적평가를 면제하여 이중제재 발생소지 차단(농림부, '20.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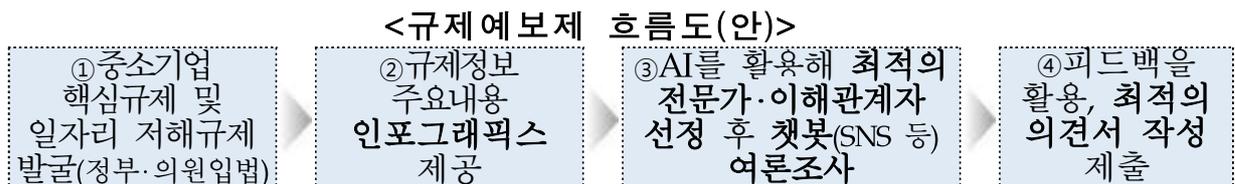
**2-3. 행정부담 경감 및 지원**

- ① 산후조리업 신고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안전시설 완비증명서 등 일정 첨부서류 제출 생략(복지부, '20.하)
- ② 목욕장 영업신고 및 지위승계시 안전시설 완비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직접확인(복지부, '20.6월)
- ③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운반차량 증차시 사업변경계획서 검토 처리기한을 현행 30일 → 10일로 단축(환경부, '20.4월)
- ④ 소규모 기업(5인 미만)의 현장실습 선도기업 지원대상 업종·분야를 확대하고 우수 기업은 5인 미만의 경우에도 신청 허용(교육부, '20.하)

## V. 규제부담 최소화 기반강화

### ① 기업참여 중소기업 규제예보제 도입 검토 중기부('21.하)

- (현황) 중소기업은 규모의 한계로 인해 규제인지 및 대응역량이 떨어지고 개별기업은 정부에 대해 쉽게 문제제기를 하지 못함\*
  - \* 중소기업 49.3%는 불합리한 규제신설시 문제 공론화시까지 기다림(중기중앙회, '15년)
- 이에 주요국은 신설·강화규제에 대해 중소기업 의견 사전수렴 제도를 마련 및 안착\*시켰으나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미흡
  - \* (미국) 카드뉴스 방식의 규제예보제 운영, (영국) 7천개사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의견청취, (EU) 중소기업 대사 임명 및 활용, 사전공청회 의무화 등
- (개선) 정보화 전략계획\*을 통해 중기 부담규제를 신속히 알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최적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중소기업 영향을 분석하는 규제예보제(쌍방향 의사소통 시스템) 도입 검토
  - \* 연구용역 및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평가를 거쳐 추진



### ②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내실화 절차개선 국조실·중기부('20.하)

- (현황) 중소기업 신설·강화규제 입법관련, 규제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부처 의견회신이 낮아 면밀한 쟁점검토 및 대안마련 애로
  - 또한 소관부처는 규제에 대한 '차등화 예비분석'을 통해 중소기업 규제부담 경감을 적극 검토하여야 하나 그 이행이 미흡\*
    - \* 현황('18~'19년) : 1,161건 중 590건(44.1%)만 차등화 예비분석표 작성 실시
- (개선) 중기 규제영향평가에 대한 소관부처 의견회신을 의무화 하고, 부처의 '차등화 분석의 충실성'을 규제혁신 평가에 반영\*
  - \* (현행) 규제차등화 실적 정량평가 → (개정) 차등화 실적 및 분석의 충실성 등 종합평가

## VI. 향후계획

### ①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과제 신속조치 및 기업홍보 적극실시

- (신속조치) 금번 규제혁신 개선과제가 조기에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신속조치 및 이행점검 실시(‘21.상)
  - \*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선과제 적극안내
- (기업홍보) 정부의 규제피해 예방 및 부담규제 정비에 대한 기업 현장 인지도·만족도 제고를 위해 전방위 홍보 실시
  - 중소기업 규제혁신 주요사례를 기업군별\*로 분류하고 알기 쉽게 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하여 수요자별 맞춤 홍보 추진
    - \* 예 : (업종) 제조업, 생계서비스, 유망서비스 등, (업태) 소상공인, 조달기업, 산단기업, 시장상인 등, (산업) 주류산업, 자동차산업, 신산업 등
  - 기업인 문자제공, 규제혁신사례집 직접배포 등을 통해 중소기업 정보탐색비용을 절감하고 각종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일괄홍보
    - \*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각종 웹페이지, SNS 및 홍보책자 등
  - 규제혁신 사례홍보와 더불어 규제부담·불편 애로사례 동시발굴 및 체감도를 조사하여 사후 규제정비시 활용

### ②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공감 규제부담 완화 지속·적극 추진 및 규제부담 최소화 기반강화 적기추진 노력 및 지원

- (규제부담 완화) 중소기업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규제피해 예방 및 부담규제 정비를 상시적으로 적극 추진 및 정례 보고
  - \* 중기 옴부즈만 기업현장 소통 적극 실시 및 중소기업 협·단체와 네트워크 강화
- (부담최소화 기반) 기업참여 규제예보제 등 주요 과제는 민간과 적극협업하여 일정에 맞춰 적기 추진

**붙임**

**과제별 세부 조치내용**

연번	과제명	조치내용	소관
<b>1. 규제피해 사전예방 (18건)</b>			
1-01	건축물 점검보수보강 관련정보 입력대상 및 의무 축소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20.4.28)	국토부
1-02	토지굴착 및 옹벽설치공사 감리원 상주의무 규제대상 축소	건축법 시행령 개정(20.4.21)	국토부
1-03	경유자동차배출가스 측정기 의무구비 규제부담 완화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20.7.22)	국토부
1-04	항공운송 면허 등록 취소사유로 훈련계획 적절성 규제폐지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20.2.25)	국토부
1-05	폐기물 수집운반업 적합성 확인 유효기간 확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20.5.19)	환경부
1-06	폐기물처리업 결격사유 대상 축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20.5.19)	환경부
1-07	대기오염 방지시설 면제사업장 자가측정 의무부여 규제 유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4.3)	환경부
1-08	축·수산물 등의 기준 미설정 항균제 잔류기준 강화규제 시행연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20.5.27)	식약처
1-09	농약 포장지 표시기준 규제변경 적용유예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개정(20.7.13)	농진청
1-10	지역응급의료기관 보안인력 배치규제 겸임허용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20.4.24)	복지부
1-11	감리원 추가배치 기간 완화 및 시행시기 유예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20.5.22)	국토부
1-12	건설농업기계 원동기 대기오염 배출허용 기준강화 규제유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4.3)	환경부
1-13	낙시어선 선장 승무경력 요건완화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개정(20.2.18)	해수부
1-14	폐지 수입신고시 제출서류 및 반출기준 완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개정(20.7.3)	환경부
1-15	우선추출방식의 표본조사 활용가능 감정평가 대상 명확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18)	국토부
1-16	아동 분만병원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대상 기준 현실화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개정(20.7.1)	복지부
1-17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작성 미준수기업 공표방법 합리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20.2.18)	국토부
1-18	비상제동장치 등 자동차 검사기준 및 방법 명확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2.28)	국토부
<b>2. 부담규제 현장정비 (27건)</b>			
2-01	채소·회훼작물 육묘업 등록기준 합리화	종자산업법 시행령 개정(20.하)	농림부
2-02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기준 완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20.7월)	식약처
2-03	마스크 제조업체 연구개발특구 입주제한 완화	입주변경 계약요청(특구재단)→예외승인→변경계약 및 생산(20.5월)	과기부
2-04	연구개발 벤처기업 확인요건에 연구개발전담 부서 추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20.2월) 및 시행(21.2월)	중기부

연번	과제명	조치내용	소관
2-05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전문인력 범위 확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20.하)	산업부
2-06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연료공급 시설 설치범위 확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20.하)	국토부
2-07	지상 수질 관측기술에 대한 녹색기술 인증기준 완화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개정 ('20.5월)	농림부
2-08	식품 고압처리 기술에 대한 녹색기술 인증기준 완화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개정 ('20.5월)	농림부
2-09	지역특산주 주원료 기준범위 유연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0.하)	농림부
2-10	액화가스의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기준 완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하)	산업부
2-11	이동식 휠체어리프트 조달품목 별도신설	상품목록심의회 심의 후 품목 신설 적용('20.4월)	조달청
2-12	시설물 안전점검시 신기술·점검 로봇 활용 명확화	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 세부지침 개정('20.하)	국토부
2-13	가축 등 화물운송차량 운전자의 화물선 탑승허용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20.6월) 및 시행(공포 후 6개월)	해수부
2-14	해양수산 연구개발결과물 이용 착수기본료 인하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개정('20.7월)	해수부
2-15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처분부담금 합리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 ('20.하)	환경부
2-16	PVC천장재를 열가소성수지천장재로 품명 확대 변경	상품목록심의회 심의를 거쳐 열가소성수지천장재로 변경 적용('20.4월)	조달청
2-17	열사용기자재 수입시 제조검사 수수료 납부대상 확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21.하)	산업부
2-18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추적평가 이중 제재 개선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정('20.하)	농림부
2-19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 서식 개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하)	국토부
2-20	본인 소유 건설기계등록원부 발급절차 간소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하)	국토부
2-21	학원 등록·변경시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제출 생략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 ('20.하)	교육부
2-22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제증서 미교부시 행정처분 완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20.8월)	국토부
2-23	컨테이너 화물의 일시양륙 사전신고 부담완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개정('20.7월)	관세청
2-24	행정정보공동 이용망을 통한 산후조리업의 신고 간소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20.하)	복지부
2-25	공중위생 영업신고시 제출서류 간소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6월)	복지부
2-26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운반차량 증가시 처리기한 단축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개정 ('20.4월)	환경부
2-27	중소기업 현장실습 선도기업 지원대상 요건완화	2020년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개정 보급('20.3월)	교육부
<b>3. 규제부담 최소화 기반강화 (2건)</b>			
3-01	기업참여 중소기업 규제예보제 도입 검토	연구용역 및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평가를 거쳐 규제예보제 추진('21.하)	중기부
3-02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내실화 절차개선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20.하), 부처 충실성 규제혁신 평가 조정('21.상)	국조실·중기부